

소송 및 법률자문 지침

제정	2013-09-27	대외협력팀-337호
개정	2015-12-11	대외협력팀-641호
개정	2017-03-30	대외협력팀-293호
개정	2018-01-10	대외협력팀-24호
개정	2018-02-28	대외협력팀-173호
개정	2018-03-29	대외협력팀-256호
개정	2021-11-22	대외협력팀-1049호
개정	2022-06-15	대외협력팀-505호
개정	2022-12-28	대외협력팀-1128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소송 및 법률자문에 관한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소송 및 법률자문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3. 30.>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라 함은 공단 또는 임직원이 공단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되는 행정·민사·형사소송, 중재, 행정심판 및 그에 따라 부수되는 신청사건 등 분쟁과 관련한 일체의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17. 3. 30., 2018. 1. 10.>
2. “법률자문”이라 함은 관계법령의 해석·적용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한 법률적 조치에 대한 변호사의 의견을 말한다. <개정 2017. 3. 30.>
3. “소송대리인”이라 함은 제1호에 해당하는 소송에서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공단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7. 3. 30., 2018. 1. 10.>
4. “법률고문”이라 함은 공단의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을 위하여 송무지원 부서에서 위촉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 말한다. <개정 2018. 1. 10.>
 - 가. 법무법인
 - 나. 법무법인(유한)
 - 다. 법무조합
 - 라. 법률사무소
 - 마.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 바.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5. “담당변호사”라 함은 공단 법률고문 중에서 소송대리인이 되는 변호사와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신설 2018. 1. 10., 개정 2021. 11. 22.>
6. “소관부서의 장”이라 함은 소송 및 법률자문 발생의 원인이 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을 말한다. <개정 2017. 3. 30., 2018. 1. 10.>
7. “송무지원 부서의 장”이라 함은 소관부서가 소송을 수행하거나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의 팀장을 말한다. <개정 2017. 3. 30., 2018. 1. 10.>

[제목개정 2018. 1. 10.]

제4조 (업무관장)

- ① 소관부서의 장은 원칙적으로 소송을 주관하여 수행한다. 다만, 소송관할지역·소송의 종류·중요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은 소송수행 부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0.>
- ② 송무지원 부서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공단 법률고문을 선정하고 소송과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개정 2015. 12. 11., 2017. 3. 30.>
- ③ 삭제 <2017. 3. 30.>

제2장 법률고문 위촉

제5조 (법률고문 위촉)

- ① 송무지원 부서는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을 위해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1., 2017. 3. 30.>
- 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법률고문의 수는 예산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따로 정하되, 최대 10인 이내로 한다. <신설 2018. 2. 28., 개정 2021. 11. 22.>

제6조 (법률고문 위촉방법)

- ① 법률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0.>
- ② 제1항의 공개모집 시에는 공단 홈페이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게시하여 다수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0.>
- ③ 공모 응시자 부족 등 공모 방식만으로 위촉이 곤란한 경우 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에 법률고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 ④ 제7조제4항에 따른 법률고문 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최고득점자를 위촉하거나 고득점자 순으로 법률고문을 위촉한다. <신설 2018. 2. 28.>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고문 계약 시작일부터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제22조가 규정하는 수행업무 결과의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1회에 한정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22.>
- ⑥ 제8조의2 및 제10조제1항과 제10조제3항의 사유로 해촉된 법률고문은 해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간 법률고문으로 위촉될 수 없다. <신설 2021. 11. 22.>

제7조 (심사위원회)

- ① 법률고문을 위촉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 12. 11.>
-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7. 3. 30., 2022. 6. 15.>
- ③ 내부위원은 실장급 이상 직원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법관·검사·변호사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공공기관에서 법무담당부서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 등으로 한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송무지원 부서의 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15. 12. 11., 2017. 3. 30., 2018. 3. 29., 2022. 6. 15.>
- ④ 심사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응시자 중에서 별표 1의 기술능력 평가 심사기준표에 따른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총점의 85% 이상인 응시자를 법률고문 적격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7. 3. 30., 2018. 1. 10., 2018. 2. 28.>
-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2. 6. 15.>
 1. 심사 대상 업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⑥ 위원은 제6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5.>
-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한다. <신설 2022. 6. 15.>
 1. 부정·부실 심사로 법률고문 선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위원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업적, 재정적 또는 그 밖에 압력이나 이해상충요소가 있는 경우
- ⑧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6. 15.>

제8조 (위촉기간)

- ①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 ② 삭제 <2021. 11. 22.>
- ③ 삭제 <2021. 11. 22.>

[전문개정 2018. 1. 10.]

제8조의2 (법률고문의 해촉)

제8조에도 불구하고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해

당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법률고문의 직무를 기피 또는 해태한 때
2. 법률고문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 제22조에 따른 평가점수 집계 결과가 평균 60점 미만인 경우
3.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4. 소송 또는 자문업무의 감소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위촉 지속이 곤란한 때

[본조신설 2021. 11. 22.]

제9조 (징계정보 조회)

- ① 법률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담당변호사의 징계처분내역을 조회하여야 한다.
- ② 징계정보를 조회한 결과 담당변호사가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견책 제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업무수행을 제한한다. <개정 2017. 3. 30.>
 1. 제명 후 재시험을 거쳐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 3. 30.>
 2. 정직기간 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 3. 30.>
 3.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 3. 30.>
- ③ 담당변호사가 계약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률고문의 위촉을 해지한다. <개정 2017. 3. 30.>

제10조 (청렴성 및 이해충돌 방지)

- ① 이사장은 담당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법률고문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0., 2018. 1. 10.>
 1.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 청탁
 2. 공단과 관련한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법률자문, 내용증명우편 발신, 소송행위, 「변호사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직무행위를 한 때 <개정 2021. 11. 22.>
 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4. 미공개 정보이용,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등 <개정 2018. 1. 10.>
- ② 담당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0.>
 1. 공단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공단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 자문, 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3. 공단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사업자,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등기 여부를 불문한다) 등의 직위를 가지는 경우
 4. 공단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 운영하는 경우
 5. 담당 사건이 법률자문이나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친족과 관계 있는 사항인 경우 <개정 2017. 3. 30., 2018. 1. 10.>
- ③ 송무지원 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항 등을 인지하거나 신고 받은 경우 엄밀히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담당변호사를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법률고문의 위촉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0., 2018. 1. 10.>

제3장 소송 및 법률자문

제1절 소송업무의 수행

제11조 (제소 및 응소여부 결정)

- ①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중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업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제소방침을 받고, 그 결과를 송무지원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0.>
- ② 공단이 피소될 경우 소장을 접수한 소관부서의 장은 소장의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응소 여부를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송무지원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0., 2022. 12. 28.>

[제목개정 2022. 12. 28.]

제12조 (소송대리인 선임)

- ① 제11조에 따라 공단이 제소하거나 응소하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송무지원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신속하게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그 결

과를 송무지원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1., 2017. 3. 30., 2018. 1. 10.>

②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법률고문을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고문 외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수의계약 하여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0.>

1. 공단의 업무상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특정분야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3. 법률고문에게 수임이 집중되어 효율적인 대응이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법률고문이 수임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개정 2018. 1. 10.>

③ 법률고문 외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특정 변호사에게 연간 전체 소송건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소장(피소된 경우 포함) 또는 답변서,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송무지원 부서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소송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30., 개정 2018. 1. 10.>

제13조 (소송위임계약)

소관부서의 장이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참고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0., 2018. 1. 10.>

제14조 (소송 보조담당자)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소 또는 응소 시 소송사건의 원인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소송 보조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 보조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이 원활히 소송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변론기일 등 법원이 지정하는 중요한 기일에 출석
3. 그 밖에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1. 10.>

제2절 소송 위임보수

제15조 (소송 위임보수)

① 소송 위임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0.>

② 착수금은 소송 위임계약 체결 후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게 지급한다.

③ 성공보수금은 승소 판결 후 제2항의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7. 3. 30.>

제16조 (보수기준)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의 보수기준은 별표 2의 변호사 보수기준표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건별 난이도를 고려하여 특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보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2. 28]

제17조 (기타 소송비용)

소송 위임보수 이외에 인지대, 송달료, 검증료, 감정료 등 기타 소송 수행상 필요한 비용은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0.>

제3절 소송결과에 따른 조치

제18조 (소송종결에 따른 조치)

① 소관부서의 장은 심급별로 종국 판결 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 결과 통보서, 소장 사본, 판결문 사본 등 관련 서면 일체를 첨부하여 송무지원 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1., 2017. 3. 30., 2018. 1. 10.>

② 소관부서의 장은 판결 내용에 따라 채권의 행사(강제집행 포함) 또는 채무이행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송무지원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0.>

제19조 (소송비용 회수)

① 소관부서의 장은 승소판결(일부승소 포함) 또는 상대방의 소 취하로 사건 종결이 확정된 경우 30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소송비용액의 확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송비용액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소송비용을 납부하도록 소송상대방에게 안내하는 등의 절차로 소송비용을 회수하고 그 결과를 송무지원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0., 2018. 1. 10., 2022. 6.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0., 2022. 6. 15.>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공단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개정 2022. 6. 15.>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 제출 경우로 한정) <개정 2018. 1. 10., 2022. 6. 15.>

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개정 2022. 6. 15.>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2. 6. 15.>

5.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개정 2018. 1. 10., 2022. 6. 15.>

③ 제2항제5호의 경우에는 외부인을 포함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의결 후 승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5.>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2. 6. 15.>

제20조 (판결금의 지급)

소관부서의 장은 패소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 및 소송비용액 등을 지급한다.

제4절 법률자문 업무

제21조 (법률자문 절차)

① 법률자문은 사내변호사 또는 제6조에 따른 법률고문에게 의뢰한다. 다만, 업무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제6조의 법률고문 외의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1.>

② 소관부서의 장이 법률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송무지원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을 참고하여 문서로 요청한다. <개정 2015. 12. 11., 2017. 3. 30.>

③ 송무지원 부서의 장은 법률자문의 결과물(변호사 의견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을 즉시 소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1.>

④ 송무지원 부서의 장은 법률자문 받은 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하고 각종 비용을 집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직접 제1항의 법률고문 또는 법률고문 외의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에서 법률자문 결과물을 보관하고 송무지원 부서에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집행한다. <개정 2015. 12. 11., 2017. 3. 30., 2018. 1. 10.>

제21조의2 (법률자문 보수)

① 법률자문 보수는 법률고문계약 체결 시 약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문요청 사항의 난이도, 공단의 중대한 이해와 관련된 사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약정보수를 초과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1. 22.]

제5절 소송 및 법률자문 평가

제22조 (법률고문 수행업무 결과 평가)

① 소관부서의 장은 담당변호사의 소송수행실적 또는 법률자문 결과를 별표 3에 따라 평가하여 송무지원 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0., 2018. 1. 10.>

② 삭제 <2021. 11. 22.>

③ 삭제 <2021. 11. 22.>

[제목개정 2018. 1. 10.]

제4장 보칙

제23조 (정보공개)

① 각 부서의 장은 소송대리인 현황을 매년 1월 말까지 송무지원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송무지원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내용 및 법률고문 현황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단의 업무상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3. 30.]

제24조 (퇴직변호사 수임제한)

공단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는 퇴직 후 2년간 공단의 소송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공개모집 방식에 따라 선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청렴서약서 제출 등)

① 소송대리 또는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변호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0.>

② 법률고문 외의 변호사가 소송대리 또는 법률자문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3. 30.>

제26조 (포상 추천)

송무지원 부서의 장은 중요한 소송의 승소에 기여한 직원에 대하여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1. 22.]

부칙

<제정 13. 9. 27.>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12. 11.>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2조제3항은 이 지침 시행 후 선정되는 법률고문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7. 3. 30.>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 10.>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2. 28.>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3. 29.>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11. 22.>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6조제5항 내지 제6항, 제8조의2, 제10조제1항제2호, 제21조의2, 제22조, 별표3은 이 지침 시행 후 위촉되는 법률고문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2. 6. 15.>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 12. 28.>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제11조의 경우 이 지침 시행 이후 제기된 소송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능력 평가 심사기준표
 <개정 2015. 12. 11., 2017. 3. 30., 2018. 1. 10., 2018. 2. 28.>

1. 제안서 평가방법

구 분	반영비율	평가주체
기술능력 평가	80%	심사위원회
입찰가격 평가	20%	송무지원 부서

※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 만점)와 입찰가격 평가점수(20점 만점)를 합산하여 송무지원 부서에서 종합평가(100점 만점) 실시

2. 기술능력 평가 심사기준표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결과	
			배점	평가점수 (해당점수표시)
참여인력 우수성 (25)	인력구성의 적정성 (경험,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인력의 유사과업 수행경험 정도 과업참여 인력의 전문성(경력, 전공 등) 	25점	25 20 15 10 5
자문수행 방법 (20)	자문수행 전략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문 수행 시 원활한 답변 수행 능력 이해관계자들과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법률적 해결 방안 	20점	20 16 12 8 4
과업 이해도 (20)	제안서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적 환경 진단의 적합성 공단 관련 주요 법령에 대한 이해도 법률문제 해결 전략의 우수성 	20점	20 16 12 8 4
적격성 (15)	업무수행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법률자문 실적 	10점	10 8 6 4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 밖에 법률자문 실적 	5점	5 4 3 2 1
합 계			총 80점	

(별표 2) 변호사 보수 기준표
 <개정 2017. 3. 30.>

변호사 보수 기준표

\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민사본안 행정소송	착수금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승소 보수금	착수금×승소비율					
민사신청 행정신청	착수금	150만원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승소 보수금	착수금×승소비율					
\		일반사건			중요사건		
행정심판	착수금	300만원			700만원		
	승소 보수금	승소보수금 없음					
헌법소송	착수금	700만원			1500만원		
	승소 보수금	착수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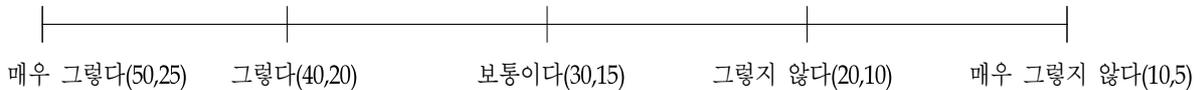
(별표 3) 소송 결과 평가표 및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
 <개정 2017. 3. 30., 2018. 1. 10., 2021. 11. 22.>

소송수행 결과 평가표 * 평가대상 기간 중 종결 사건 대상

1. 건 명 :
2. 기 간 :
3. 자문기관 :
4. 평 가 표

평가 부문	구분	평가기준	건당 배점	평가 점수	비고
① 기본 점수	기본 배점	소송사건 등의 내용에 맞게 정확하게 대응하였는가?	50		
		준비서면·답변서 등이 판결에 유용하였는가?	25		
		기일 등을 준수하였는가?	25		
② 감점 요인	수행 성실도 및 수행능력	청구금액 오류 및 보정사항 미이행	10		
		항소이유서 등 주요기한 미준수	20		
		패소판결문 송부지체 (도달일로부터 2일 이내)	20		
		그 밖의 소송수행 충실도	10		
	소 계				
③ 가점 요인	승소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의 승소 및 판례의 변경 등 공단업무 기여도	판례 변경	10		
		소송수행의 적극성, 성실성	10		
	소 계				
평가합계(①-②+③)					

* 기본배점 평가점수



종합의견 : (평가합계 점) *우수(90점 이상), 보통(60~9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

20 . . .

소송보조담당자 성명 ○○○ (서명)

○○○ 팀장 성명 ○○○ (서명)

(별지 제1호서식) 소송위임 계약서

<개정 2015. 12. 11.>

소송위임 계약서

위임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수임인 _____(이하 “소송대리인”이라 한다)는 원고 _____와 피고 _____간의 _____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소송의 위임) “공단”은 “소송대리인”에게 위 사건의 제__심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별도로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제2조(소송비용) ① “공단”은 “소송대리인”에게 위 사건의 착수금으로 금 _____원을 지급한다(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② “공단”은 “소송대리인”에게 위임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각종 예납금 및 보증금 기타 공과금, 감정료, 출장여비 등을 지급한다.

③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 등으로 승소(일부 승소 포함)한 때에는 “공단”은 “소송대리인”에게 승소보수금으로 금 _____원을 지급한다.

제3조(중요소송행위의 사전승인) “소송대리인”은 수임사항 중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소송의 탈퇴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신의성실 등) “소송대리인”은 수임사건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소송업무수행상 지득한 “공단”의 업무상 기밀에 대하여 “공단”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소송진행 상황통보) “소송대리인”은 소송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상소의 제기 등 기한의 제한이 있는 상황에 “공단”이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과 “소송대리인”이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공단”과 “소송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

위임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 송파구 방이동 88(올림픽로 424)
 이사장 _____(인)

수임인

소송대리인 _____(인)

(별지 제2호서식) 소송수행 결과 통보서

<개정 2018. 1. 10.>

소송수행 결과 통보서

법원				사건번호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담당변호사	
소송물가액				인지대·송달료 기타비용		
접수일				종국결과		
판결주문						
사건개요						
진행사항						
소 송 결 과	심급	선고일자	판 결 문 송 달 일 자	확 정 일 자	상 소 일 자	
	1심	
	2심	
	3심	
변 호 사 보 수	착수금					
	성공보수					
소송비용 확정신청	소송비용액			확정일		
판 결 에 따 른 집 행 비 용	채무액				공탁여부	
					공탁비용	
기타사항						

(별지 제3호서식) 법률자문 질의서
 <개정 2015. 12. 11., 2022. 12. 28.>

법률자문 질의서

의뢰일자 : . . .

질의 담당자	부서명	성명	직위	연락처		E-Mail
				전화번호		
				휴대폰		
제 목	※ 자문 제목을 간략하게 기재					
질의 배경 (사실관계)	※ 자문을 하게 된 배경 상세히 기재					
질의 사항	※ 자문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 첨부자료 ◇

1. 자문과 관련된 문서, 자료 일체 1부
2. 관련법령 및 규정 일체 1부.

청 령 서 약 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인은 공단 법률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공단에서 의뢰 받은 법률자문 및 소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행하고 공단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2. 법률자문 및 소송 수임을 위해 업무와 관련된 공단 직원과의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3. 범죄사실, 비위행위 등 변호사 징계전력 확인 및 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 관련 시 해촉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단과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개입 시 사전 신고하고 관련 직무를 회피하겠습니다.
5. 공단의 업무상 기밀을 유출하지 않겠으며 공단 홈페이지에 자문·소송 현황 공개에 동의하겠습니다.

위 법률자문 청렴서약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위반에 따른 공단의 관련 조치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자 : (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귀중